

처분사전통지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문서번호 : 곤지암읍-10518

시행일자 : (2025.04.17)

수 신 : 수신자 참조

주무관	개발팀장	곤지암읍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2. 당사자	성명 (명칭)	와이 i (주) ,오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서울특별 시 서초구 반포대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곤지암읍 열미리 416-3번지 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건축 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11조, 제20조,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6.의 건 제 출		기관명	곤지암읍 부서명 개발팀 담당자	
		주 소	경기도'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9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2025. 5. 19. (월)	

광 주 시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의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